

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

○ 존경하는 의장님!

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
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!

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.

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
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
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 4월 15일

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

“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” 등 총 5건에 대하여

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

관계 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

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

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
- 첫번째, 정 윤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
“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”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「임대주택법」 이 「민간임대주택에
관한 특별법」 등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
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쉬운 법령
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
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

제5조 제1항 중 “①위원장” 을 “① 위원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
항 중 “②부위원장” 을 “② 부위원장” 으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①임대” 를 “① 임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“②위원회” 를 “② 위원회” 로,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” 를 “한 차례
만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③위원회” 를 “③ 위원회” 로 한
다.

제10조제1항 중 “①위원회” 를 “① 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①위원회” 를 “① 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③위원회” 를 “③ 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①위원회” 를 “① 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②위원회” 를 “② 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③위원회” 를 “③ 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①분쟁” 를 “① 분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②제1항” 을 “② 제1항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③위원회” 를 “③ 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④조정안” 을 “④ 조정안” 으로 한다.

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
“수정가결” 하였습니다.

- 두번째, 김명수, 마선식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“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유지·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지원대상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“원안가결” 하였습니다.

- 세번째, 윤창근 의원이 발의한
“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
‘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’ 수립 촉구 청원서”에
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청원은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
한 ‘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’을 수립하여 줄
것과 아이들이 통학 시 이용하는 모든 도로를 포
함하여 “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종합적이고 합리적
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며, 실태조
사에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할 것을 요구
하는 청원으로 “채택” 하였습니다.

- 네번째, 이상호 의원이 발의한
“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
지정 청원서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청원은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2030 성남시 도시
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태평 3구

역이 개발계획 1단계 포함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2030 기본계획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하였으므로 2020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수진1, 신 흥1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착수, 2022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태평3, 상대원3, 신 흥3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21년 예산반영하여 용역 착수 하는것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“불채택” 하였습니다.

- 다섯 번째, 성남시장이 제출한 “2030 성남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청취안은 2020 성남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’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0년 정비계획수립 구역인 수진1, 신 흥1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착수, 2022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태평3, 상대원3, 신 흥3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21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 착수하는 것으로

“의견 제시 채택” 하였습니다.

-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
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
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
“안”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
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 선 식